

대전지방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나8818(본소), 2015나8825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나8818(본소), 2015나8825(반소) 판결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. 8. 12 선고 2014가단8624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B

변론 종결 2016. 3. 8.

판결 선고 2016. 4. 12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. 8. 12. 선고 2014가단8624(본소),
2015가단4735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서산시 C 대 50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74㎡에 관하여 2003. 5. 2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1) 주위적 청구취지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서산시 C 대 500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74㎡에 관하여 1981. 1. 2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

2) 예비적 청구취지

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74㎡에 관하여 2001. 1. 2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74㎡ 지상 슬라브 지붕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 원고는 피고에게 18,948,76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. 5. 20.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치는 부분】

- 제2쪽 15행 내지 21행

『가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.

나. 원고는 1983. 5. 21. 서산시 D 대 196㎡(이하 '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'라 한다)에 대하여 1983. 5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위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83. 5. 2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1990. 8.경 담장을 축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주택 및 담장'이라 한다.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지번인 서산시 E로 등기되어 있다).

다.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74㎡ 지상에 걸쳐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9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갑 제7호증의 영상,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』

- 제5쪽 12행 내지 14행

『② 원고가 이 사건 담장 등을 축조할 당시 피고가 토지 침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및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상당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담장 등을 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하수구 등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기존 경계에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.』

- 제6쪽 2행, 9행 각 '1981. 1. 23.' -> 각 '1983. 5. 21'

- 제6쪽 4행, 6행, 11행 각 '2001. 1. 23.' -> 각 '2003. 5. 21.'

【추가하는 부분】

- 제3쪽 20행 '추정된다.' 하단에 추가 : 『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81. 1. 23.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3. 5. 21.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83. 5. 21.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. 5. 21.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[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,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)].』

2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74㎡에 관하여 2003. 5. 2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하나 이와 취득시효의 완성일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판사장진훈

판사박현진

판사김선화

별지